#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19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 박성준·조 국·백혜련

허종식 • 박상혁 • 염태영

민병덕 • 조계원 • 박홍근

윤종군ㆍ허 영ㆍ한민수

정성호 · 이훈기 · 박희승

의원(15인)

####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후보자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후보자보다 많이 득표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당선인 결정은 용이하나 당선인의 민주적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 하여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 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각각의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투표는 선거일후 3일째 되는 날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 다.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신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23日"을 "23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4일"을 "14일."로 하고, 같은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는 30일

다만, 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8일

제34조제1항에 제1호의2,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
- 3의2. 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선거 일 후 7일째 되는 날
- 4.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의 사전투표일은 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일 후 3일째 되는 날
- 5. 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의 사전투표

일은 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 후 3일째 되는 날 ③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2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 및 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는해당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일까지"를 "전일까지[제18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 또는 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결선투표확정일(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날을 말한다. 이하같다)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이하 "결선투표운동기간"이라 한다)]"로하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2일 이내"를 "2일,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정일 후 3일 이내"로, "5일"을 "5일(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정일 후 3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16면 이내"를 "16면(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의 경우 8면) 이내"로, "12면 이내"를 "12면(제191조의2제1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의 경우 6면)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중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 등록마감일 후 2일)"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 등록마감일 후 2일,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정일 후 2일)"로, "3일"을 "3일(결선투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날로부터 3일 전)"로, "10일"을 "10일(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같은 항 제2호 중 "7일"을 "7일(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정일후 2일)"로, "10일"을 "10일(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 결선투표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결선투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날로부터 3일 전)"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選擧運動其間중"을 "선거운동기간 중 또는 결선투표운동기간 중"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11回 이내"를 "11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回 이내"를 "2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回 이내"를 "5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운동기간중"을 "선거운동기간 중 또는 결선투표운동기간 중"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3회 이상"을 "3회 이상(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운동기간 중"을 "선거운동기간 중 또는

결선투표운동기간 중"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1회 이상"을 "1회 이상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선거운 동기간 중"을 "선거운동기간 중 또는 결선투표운동기간 중"으로, "1회 이상"을 "1회 이상(자치구·시·군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으로 한다.

제15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 및 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득표율 순으로 하되, 득표율이 동일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후보자 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87조제1항 본문 중 "다수"를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國會議長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7조의2(대통령당선인 결정의 특례) ①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이하 "대통 령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한다.
  - ② 대통령결선투표는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일하여 결선투표 대상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대통령결선투표 결과 최고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 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1조제1항 본문 중 "다수"를 "과반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88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91조의2를 제191조의3으로 하고, 제1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결정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일하여 결선투표 대상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결과 최고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는 재적의 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관하여는 제19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8조의1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 및 제191조의2제1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재외선거인 명부등은 해당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8조의17제1항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결선투표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의 기간 중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선투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선거기간) ①選擧別 選擧	제33조(선거기간) ①
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統領選擧는 <u>23日</u> <u>&lt;단서</u>	1 <u>23</u> 일. 다
<u>신설&gt;</u>	만,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u>경우에는 30일</u>
2.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	2
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	
는 <u>14일</u> <u>&lt;단서 신설&gt;</u>	<u>14일</u> . 다만, 제191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u>에는 28일</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34條(選擧日) ①任期滿了에 의	第34條(選擧日) ①
한 選擧의 選擧日은 다음 各號	
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2.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u>7일째 되는 날</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3의2. 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u>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는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

<신 설>

<신 설>

② (생략) <신 설>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 에,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 진다. <단서 신설>

- 4.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 통령 결선투표의 사전투표일 은 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일 후 3일째 되는 날
- 5. 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의 사전투표일은 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 후 3일째 되는 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2 및 제3호의2에 따라 결선투 표를 실시하는 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 및 제19 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

#### ②・③ (생략)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지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u>전</u>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제64조(선거벽보)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 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

는 경우 선거인명부는 해당 결
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u> 가진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에59조(선거운동기간)
전일까지[제187조의2제1항
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 또는
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
시하는 경우 결선투표확정일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
다)부터 결선투표 전일까지(이
하 "결선투표운동기간"이라 한
다)]
1. ~ 5. (현행과 같음)
세64조(선거벽보) ① (현행과 같
$\frac{\Diamond}{\Box}$ )
②

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 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 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 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 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 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 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 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 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 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

2일, 제187조의2제1항
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는 결
선투표확정일 후 3일 이내
<u>5</u> 일(제191조
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장 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
정일 후 3일)

-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 ③ ~ ⑫ (생 략) 제65조(선거공보) ① (생 략)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 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 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 ③ ~ ⑤ (생 략)
  - ⑥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대통령선거
    -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

일 후 <u>6일(제51조에 따른</u>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 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현행과 같
<u>⋄</u>
②
<u>16</u> 면(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의 경우
<u>8면) 이내12면(제191조</u>
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장 결선투표의 경우 6면)
이 내
③ ~ ⑤ (현행과 같음)
6
1
가
<u>6일(제51조에 따른</u>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
등록마감일 후 2일, 제187
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는 결선투표확정

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 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 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 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 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 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 여 발송한다.

나. (생략)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기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

	<u>일 후 2일)</u>
	2이/겨서트고
	<u>3일(</u> 결선 <u>투표</u>
	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u>날로부터 3일 전)</u>
	<u>10</u> 일(제18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
	투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현행과 같음)
0	다. (현생각 百百)
2.	
	<u>7</u> 일(제191조의2제1항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
	투표는 결선투표확정일 후 2
	일)
	10이/ ᅰ 101
	<u>10일(제191</u>
	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 결선투표의 경우
	<u>는 제외한다)투표</u>
	안내문을 발송하는 때(결선

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 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 한다.

#### ⑦ ~ ⑭ (생 략)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成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을 이용한 演說을 할 수있다.

1. 大統領選舉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한 演說員이 각각 1回 20分 이 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11回 이내

- 2. (생략)
- 3.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투표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u>날로부터 3일 전)</u>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u>d</u>
거운동기간 중 또는 결선투표
<u> 운동기간 중</u>
1
11회 이내(결선투
표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
2. (현행과 같음)
3

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 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2回 이내

- 4. (생략)
- 5. 市・道知事選舉 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 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5回 이내

#### ② ~ ③ (생 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 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 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 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 인을 초청하여 <u>3회 이상</u>

- 2. (생략)
-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
4. (현행과 같음)
5
5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선거운동기간 중 또
는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
<u>3회 이상(결선</u>
투표운동기간 중 1회 이상)
2.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에 있어서 <u>선거운</u> <u>동기간 중</u>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 2. (생략)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 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 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 하여 <u>1회 이상</u>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 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 ④ ~ ⑭ (생 략)

-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 者의 掲載順位 등) ①・②(생 략)
  - ③候補者의 掲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

<u>선거운</u>
동기간 중 또는 결선투표운동
<u>기간 중</u>
1
<u>1</u> 회 이상(결선투
표운동기간 중 1회)
2. (현행과 같음)
3
선거운동기간 중 또는 결
선투표운동기간 중
<u>1회 이상(자치구·시·군</u>
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
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④ ~ ⑭ (현행과 같음)
度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
者의 掲載順位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3

재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國 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 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無所屬候補者의 순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 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 한 다. <단서 신설>

④ ~ ⑩ (생 략)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 第公告・통지) ①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가 有效投票의 <u>다수</u>를 얻은 者 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國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다만,</u> 제18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 결선투표 및 제19
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
는 경우에는 득표율순으로 하
되, 득표율이 동일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후보자
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결
<u> 정한다.</u>
④ ~ ⑩ (현행과 같음)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
公告・통지) ①
<u>과반수</u>

다만, 候補者가 1人인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總數의 3 分의 1 이상에 달하여야 當選 人으로 決定한다.

②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통지에 의하여 國會는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告하고, 지체없이 當選人에게 當選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 <삭 제>
3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④ (현행과 같음)
제187조의2(대통령당선인 결정의
특례) ①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
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
표(이하 "대통령결선투표"라 한
다)를 실시한다.
② 대통령결선투표는 대통령선
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

- 은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일하여 결선투표 대상 정수 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해당 후보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 령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 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 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 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후보자 가 1명이 된 경우에는 그 득표 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대통령결선투표 결과 최고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 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 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 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증을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 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 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가 有效投票의 <u>다수</u>를 얻은 者 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당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u>다만</u>,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③ 제187조제4항 및 <u>제188조제</u> 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u><신 설></u>

<u>⑥</u>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
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
187조제4항을 준용한다.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
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과반수
<u>&lt;단서 삭제&gt;</u>
③ <u>제188조제</u>
<u>4항 및 제6항</u>
제19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결정의 특례)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
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
표(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라 한다)를 실시한다.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일하여 결선투표 대상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명을 초과하는 때에는그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결과 최고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해당 지방의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

<u>제191조의2</u>(당선인 사퇴의 신고) (생 략)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재외선거인명 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 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은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 중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관하여는 제191조제3항을 준용한다.

<u>제191조의3</u>(당선인 사퇴의 신고) (현행 제191조의2와 같음)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

\_\_\_\_\_

\_\_\_\_\_

하에 따른 대통령결선투표 및 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통령결선투표 및 제1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은 해당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 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세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 순영) ①
<u>설</u>
<u>치·운영하여야 하고,</u>
<u>다만, 대통령결선</u>
투표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5
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의
기간 중 3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
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